



고객 및 파견직원에 대한 정보를 부정사용한 공동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사건

3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19년(네) 제733호
판결 일자	2007. 12. 20.	판결 결과	원고의 예비적청구 인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쿄 데이터 캐리어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탠드오프 (상호 변경 전 유한회사 스탠드오프) 외 3명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영업 비밀	고객 정보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신의칙, 공동불법행위		

02 사건 개요

항소인은 인재파견사업 등을 경영하는 업체인데, 항소인의 전 직원3명 및 동인들을 고용한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탠드오프가 항소인의 고객 정보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항소인 고객의 파견 직원을 항소인에서 피항소인 회사로 변경하였고, 항소인의 파견 직원을 피항소인 회사의 파견 직원으로 등록 시켰다.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예비적으로 민법에 의거, 손해금 2261만 엔 상당을 청구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피 고 (항소인)

인재 파견 부문의 컴퓨터는 다른 부문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초과근무의 업무 내용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지도하였고, 반환된 초과근무 내용은 항소인회사가 소각 내지 용해 처분하였다.

준수에 관한 계약서에는 ‘귀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밀정보를 공개, 누설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항소인들은 일제히 근무 누락, 퇴직함으로써 항소인 회사의 근무 배치의 혼란을 일으켰다. 피항소인들이 항소인회사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 직원 정보를 이용하여 피항소인 회사를 위해 파견 직원의 권유를 실시하고, 파견처에 대한 영업을 했다.

컴퓨터를 부팅하기 위한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재 파견의 부서는 다른 부서와 같은 층에 있으며, 가리개 등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접속이 가능하며, 파견직원이 접속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파견 직원의 근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는 피항소인들을 비롯한 각 매니저가 자택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 지사장은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비밀정보를 특정한 적은 없다.

고의 적인 근무누락이나, 퇴직 혹은 항소인 회사의 근무 배치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나, 항소인 회사의 운영방식에 회의를 일으켜 퇴직한 것이다.

04 판결 요지

항소인 회사에 반환된 초과근무 내용은 항소인에서 소각 내지 용해 처분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지만, 피항소인 이외의 관리자들이 회사에 반환 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상당수의 서류를 회수하였으나 파견직원 통지서의 회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나 그 계약체결이 비밀관리성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닌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충분한 비밀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직간 피항소인들이 파견 회사의 변경을 실현 한 것은, 피항소들이 스스로 초래한 근무 누락 및 일제 퇴직으로 인한 근무 배치의 혼란에 편승한 것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피항소인들은 본 건 정보에서 적당한 형태로 고객 정보, 직원 정보의 적어도 일부를 얻고, 이를 통해,

항소인의 파견처를 피항소인 회사의 것으로 얻은 것이다. 피항소인 회사는 전직 한 직원들의 인식,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그대로 회사의 인식, 결정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동인들과 공동으로 상기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의 손해는 267만 엔 상당으로 보인다.

05 Key Point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에는 암호를 설정해야하고, 출력물은 반드시 수거하고 수거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의 요건이 엄격한 관계로 영업비밀의 요건 충족에 대해 완전한 자신이 없다면 주위적 청구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예비적으로 주장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